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42

발의연월일: 2022. 9. 29.

발 의 자:기동민·강선우·강준현

김영배 · 김원이 · 김회재

박용진 · 송갑석 · 인재근

정태호 · 한준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.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으나,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 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음.

이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 고자 함.

또한,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,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,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

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 자를 보호하려는 것임

주요내용

- 가.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즉시 현장에 나가 「형사소송법」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등 범죄수사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, 가족을 포함하여 접근을 금지하고,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18조제3항 삭제).
- 라.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20조 및 제21조).

법률 제 호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호 중 "분리 및 범죄수사"를 "분리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형사소송법」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상대방"을 각각 "상대방 또는 그의 동 거인, 가족"으로 한다.

제5조제5항 중 "1개월"을 "2개월"로 한다.

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의 제목 중 "잠정조치"를 "잠정조치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(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2

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
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	제3조(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
한 응급조치) 사법경찰관리는	한 응급조치)
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	
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	
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	
를 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	2
분리 및 범죄수사	<u>분리</u>
<u><신 설></u>	<u>2의2. 「형사소송법」 제212조</u>
	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
	<u>범죄수사</u>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	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
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	
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	
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	
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	
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	
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	
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	
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	
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	

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 내의 접근 금지
- 2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 금지
- ② (생략)
- 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 저
 - ① ~ ④ (생 략)
 -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② (생 략)
 -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- 제20조(잠정조치의 불이행죄) (생 제20조(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) 략)

<신 설>

·.
1 <u>상대방 또는</u>
그의 동거인, 가족
2 <u>상대방 또는</u>
그의 동거인, 가족
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2개월</u>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· ② (현
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-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
 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 조치(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 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

제21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제21조(과태료) <삭 제> 없이 긴급응급조치(검사가 제5 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 · 징수한다.

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
(D)	(현행과	7101
(4)	(প 앵파	イロリ

3	<u>제2항</u> -	 	